KOSHA GUIDE

C - 64 - 2018

- (2) 벽돌, 블록, 시멘트 등의 조적공사용 자재를 실은 차량은 건설현장에서 지정한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경비. 신호수 등의 통제에 따라 주행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구간에는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분량의 자재만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자재를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적재할 때에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. 특히, 복도 및 발코니 등 취약부위에는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공구를 운반하는 경우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특히, 작업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달줄,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인력운반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,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.

4.1.2 인력 운반

- (1) 인력운반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골격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. 그 밖의 인력운반작업이 어려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(중량물의 취급) 및 KOSHA GUIDE C-102-2014 (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지침)에 따른다.
- (2) 인력운반작업 전 작업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인력운반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재 중량이 허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짐을 들어올리며, 가급적 짐은 몸 가까이 붙여 들어 올리고 하중이 하체에 전달되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.



<사진1> 나쁜 자세



<사진2> 바른 자세